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직권 폐지에 따른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따른 통지”를 “따른 인가취소의 통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인가폐지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보
험사무대행기관 인가폐지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 별지 제31호, 별지 제31호의2, 별지 제31호의3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u><신 설></u>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① ----- <u>따른 인가취소의 통지</u> ----- ----- -----. ②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인가폐지의 통지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폐지통지서에 따른다.

일괄적용사업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서
☐사업 개시 ☐사업 종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

일괄적용 사업	명칭	대표자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건설공사 개시	공사명			
	총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원	발주공사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공사기간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건축허가(신고)사항		공동도급공사 []해당 []비해당	
	발주자명		공제가입번호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별 목작업 개시	별 목 현장명	전화번호
	현장 소재지	
	별 목 재적량	별 목기간
	인원	발주자명

지점·지사 ·공장 등 개시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사업 종료	개시번호
	명칭
	종료일

신고인(사업주)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4 -

유의사항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별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후>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근로자 종사 사업장)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명			

건설업·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사용자·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모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인)

신청인(근로자)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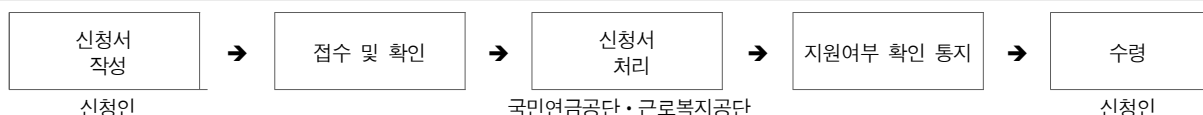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님이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적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를 적으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사용자·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사용자·사업주)" 란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 란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31호의2서식] < 개정 후 >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
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예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

-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제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사업주가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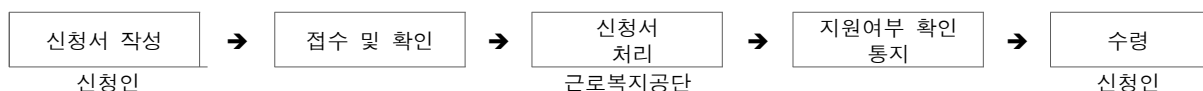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 개정 후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3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규모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

 - 개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 사업장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하여 산정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제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 제외

- 작성방법

작성방법

- 처리절차

(앞쪽)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폐지통지서

문서번호

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인가일	폐지(예정)년월일
폐지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영 제47조제6항에 따른 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팩스()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전자우편주소
	근로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업태	종목 (주생산물)	업종코드
보험가입 신청내용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원)	
	사업의 내용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아니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보험가입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사항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승인 []불승인
보험관리번호			

(뒤쪽)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의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의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근로자 수” 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사업개시일” 란과 “업태와 종목” 란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의 내용” 란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란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